

자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미국에서 일하는 동안 가지는 권리를
설명하는 팸플릿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
1-888-373-7888(미국 내)



미국 내에서는 233733으로 'HELP'를 문자로 보내거나
help@humantraffickinghotline.org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자신의 권리를 아십시오

귀하는 미국에 있는 동안,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에서 일할 권리
- 노조, 이민자, 노동 권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
- 학대하는 직장을 떠날 권리
- 차별, 괴롭힘 및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방문하세요: MigrantWorker.gov에서 이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침해된 경우: 미국 내에서 **전국 인신매매 신고 핫라인(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에 연락하세요.**

전화: 1-888-373-7888 문자: 233733로 "HELP" 입력

이메일: help@humantraffickinghotline.org

통화는 익명, 기밀, 안전하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훈련된 전문가가 200개 이상의 언어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humantraffickinghotline.org****를 방문하세요.**

미국에서 즉각적인 위험에 처한 경우:

911로 전화하여 현지 경찰에 연락하세요. 응급 상황, 위치, 그리고 전화를 걸고 있는 번호를 공유하십시오. 필요할 경우 통역사가 제공됩니다.

A-3, G-5, H, J, NATO-7, TN 또는 B-1 가사근로자 비자를 신청한 경우: 다음 중 하나의 경우 이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 발급된 비자와 함께 (인터뷰를 하지 않은 경우)
- 비자 인터뷰 중, 영사가 비자를 받기 전에 이 안내서를 받았고, 읽었으며,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영사는 미국에서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돕기를 원하며,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의 ****영사 협력 프로그램(Consular Partnership Program, CPP)****을 통해, 귀하의 영사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PP를 통해 영사는 자원을 찾고, 지원을 제공하며,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믿을 경우 불만을 제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협력 국가 목록은 다음을 방문하세요:

www.dol.gov/general/migrantworker/support

비자 신분엔 상관없이, 귀하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귀하가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해고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 고용주는 귀하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업에서 고용주는 최소 연방 법적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 고용주는 연방 최저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귀하가 더 높은 최저 임금을 규정한 주, 도시, 카운티 또는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
 - 귀하의 근로 계약서나 비자 프로그램에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
 - **주당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고용주는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 정규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10을 받는 경우, 추가 근무 시간에는 시간당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돈을 제하면 이를 공제라고 합니다. 귀하의 수입 명세서(예: "급여 명세서")에는 각 공제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공제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항목(예: 건강보험, 노동조합 회비)이나 특정 세금 납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급여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돈을 제하거나 귀하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니폼, 안전 장비, 필수 도구, 용품 또는 장비, 채용 수수료. 일부 비자의 경우 주거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노동조합 회비와 같은 귀하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항목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세금에 대한 공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급여 관련 질문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1-866-487-9243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임금 및 근로시간 사무소를 방문하세요:

www.dol.gov/agencies/whd/contact/local-offices

¹ See www.dol.gov/whd/minimumwage.htm for the current minimum.



도움말: 체류 기간에 따라 미국에 있는 동안 건강 보험을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 보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재정적 지원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기

안전한 작업장: 고용주는 작업장이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교육: 고용주는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상이나 사고를 피하는 방법, 그리고 작업장 안전 및 건강 규칙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필수 안전 장비: 귀하는 장갑이나 추락 방지를 위한 하네스와 라이프라인 같은 필수 안전 장비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이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 부상 및 질병 신고: 부상이나 질병을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에게서 자신의 의료 기록을 보고 복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건강 불만 신고: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귀하(또는 대리인)은 산업안전보건청(OSHA)에 비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조건에 대해 고용주에게 알릴 때, 또 다른 직원을 증인으로 데려가거나, 불만 사항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공유하여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OSHA 검사관과 비공개로 이야기하고, 작업장 위험을 찾기 위한 검사나 테스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직장에서 위험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안전 및 건강 위험에 대해 제기한 문제로 귀하를 처벌한다고 생각하면, OSHA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면, 처벌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whistleblower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주 노동자 조직이나 이전 이주 노동자들로부터 조언을 받으세요. 이들은 미국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의 이름과 번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OSHA 근로자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하세요:

www.osha.gov/workers

의료 치료: 필요하다면 스스로 의사나 간호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면, 고용주는 귀하의 의료비와 일부 잃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의사, 클리닉 또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일하는 주에서 근로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근로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 사무소를 찾으려면 여기를 방문하세요:

www.dol.gov/agencies/owcp/wc

주거지: 고용주가 주거지를 제공하는 경우, 그 주거지는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주거지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깨끗하고 접근하기 쉬워야 합니다. 고용주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과 비누 또는 유사한 세정제가 있는 세척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식수: 깨끗한 음용수를 무료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위: OSHA에 의해 보호되는 고용주는 극한 온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 열 관련 질병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이나 위험한 화학물질, 농약을 다루고 있거나 그 주변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

-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비누와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안전 장비(예: 호흡 보호기 또는 장갑)를 제공하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 직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급 교육을 제공하여, 작업 중인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농약이 언제, 어디서 살포되었는지**와 다시 그 지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어 우발적인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약이 살포되는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고 검사나 권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1-866-4-USA-DOL로 전화하거나 노동부 웹사이트(dol.gov 또는 migrantworker.gov)를 방문하세요.

H-2A 비자 근로자로서 작업장, 주거지 또는 교통수단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1-866-487-9243으로 전화하거나 지역 임금 및 시간 사무소를 방문하세요:

www.dol.gov/agencies/whd/contact/local-offices.

3. 노동조합, 이민자, 노동 권리 단체에 도움 요청하기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동료들과 함께 고용주에게 더 나은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결성, 가입,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www.nlr.gov
- 더 나은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공개 연설, 집회, 시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4. 직장 그만두기

- 고용주가 귀하를 학대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 직장을 계속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1-888-373-7888로 국가 인신매매 핫라인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를 떠나면 이민 신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신분을 변경하거나 새 고용주에게 후원을 받아 일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노동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추방으로부터 일시적인 보호를 받고 일시적인 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dhs.gov/enforcement-labor-and-employment-laws에서 확인하세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만약 자신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생각되면 국가 인신매매 핫라인(1-888-373-7888)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국가 노동 관계 위원회(1-844-762-6572)에 연락하여 지역 이민 코디네이터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추가 자료와 미국 정부에서 특정 우려 사항에 대해 연락할 기관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grantWorker.gov/TrabajadorMigrante.gov.

5. 차별과 괴롭힘에서 자유로워지기

- 고용주는 귀하의 나이(40세 이상인 경우), 성별, 인종, 출신 국가 및 민족, 피부색, 종교, 유전 정보(가족 의료 기록 포함),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 차별 신고를 하려면: www.eeoc.gov/how-file-charge-employment-discrimination 시민권 상태에 따른 차별 신고를 하려면: www.justice.gov/crt/filing-charge
- 누구도 귀하를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괴롭힐 수 없습니다.

6.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지기

- 누구도 귀하를 성적으로 착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성적으로 만지는 행위, 성행위 강요, 속임수나 강압으로 키스, 성교, 구강 성교, 또는 엿보기와 같은 성적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노동 착취와 인신매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12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만약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국가 인신매매 핫라인(1-888-373-7888, 미국 내) 또는 이 소책자의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에 신고하세요. 영어를 하지 못하는 경우 통역사를 요청하세요.





도움말: 고용주, 계약자, 또는 채용 담당자로부터 받는 법률 조언은 편향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비이민 신분에 따른 추가 권리

A-3, G-5, NATO-7, B-1 가사 근로자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근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시급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미국의 연방, 주 또는 지방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무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며(고용주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경우), 왕복 항공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시간과 근로자가 퇴사를 계획할 경우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미국 가사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기타 혜택(유급 휴식시간, 무급 병가, 근로자 보상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이해하고 복사본을 받으세요.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서명하지 마세요.

A-3, G-5, NATO-7 가사 근로자를 위한 추가 요구 사항

최소한 계약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가 모든 미국 법을 준수할 것에 대한 동의.
- 급여 지급 주기, 지급 방법, 근무 의무, 주간 근무 시간, 휴일, 병가, 휴가 일수에 대한 정보.
- 고용주가 귀하의 여권, 근로 계약서, 또는 기타 개인 물품을 보관하지 않을 것에 대한 동의.



H-2A 임시 농업 근로자 비자

- 직장을 얻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요청하면, 본국에 있을 경우 가까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거나, 미국에 있을 경우 임금 및 시간 부서(Wage and Hour Division) 1-866-487-9243에 연락하세요.
- 고용주나 고용주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귀하를 빚에 빠지게 하거나 빚을 갚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에 있을 경우 국가 인신매매 핫라인 1-888-373-7888에 전화하거나 본국에 있을 경우 가까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세요.

고용주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율에 따라 모든 근로에 대해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급여는 연방, 주 또는 지방 최저 임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채용지에서 근로지까지의 교통비와 여행 중의 일일 식사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근로 계약서에 따라 일해야 할 시간의 절반을 근무한 후 그 비용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 첫 근무 주에 근로지까지의 여행비와 비자 비용을 환급해야 하며, 급여에서 경비를 뺀 금액이 미국의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H-2A 또는 H-2B 근로자로서 권리에 대해 질문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1-866-487-9243으로 전화하거나 지역 임금 및 시간 사무소를 방문하세요:

www.dol.gov/agencies/whd/contact/local-offices.

H-2A 임시 농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

-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서면 근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계약서에는 급여, 근무 기간, 근무 시간, 복리후생(교통비, 주거지 및 식사 또는 취사 시설 등),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H-2A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미국 사회 보장세와 메디케어 공제를 급여에서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귀하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지를 제공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거지에서 근로지까지 무료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적절히 보험에 가입된 차량과 필요한 안전 장비를 갖춘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안전하게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하거나,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취사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 귀하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고, 불만을 제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근로자나 법률 제공자와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처벌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고용주는 귀하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비, 숙소 및 식사를 제공하거나 지불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중 최소 3/4의 기간 동안 근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H-2B 임시 비농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

-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면 직무 명령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명령서에는 급여, 근무 기간, 근무 시간,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교통, 주거, 식사 또는 취사 시설 등),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완료했거나 고용주가 근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귀하를 해고한 경우, 고용주는 귀하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교통비, 숙소 및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J-1 교환 방문 비자

- 서명된 DS-2019 양식에는 프로그램 날짜, 프로그램 범주, 후원자의 이름, 교환 프로그램이 진행될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후원자는 프로그램 동안 자금, 활동 장소, 프로그램 날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DS-2019 양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도움말: 고용주는 귀하에게 정해진 시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직원들에게 매 2주마다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귀하의 급여 지급 일정은 근로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귀하의 후원자는 교환 프로그램의 모든 비용, 조건 및 규칙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귀하가 동의한 업무 내용, 급여, 예상 근무 시간(해당되는 경우)을 포함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긴급한 건강, 안전 또는 복지 문제가 발생하면, J-비자 긴급 핫라인 1-866-283-9090으로 연락하십시오. 일반적인 질문이나 문제는 Jvisas@state.gov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귀하의 후원자는 귀하가 의료, 본국 송환 및 대피 보험에 가입되도록 해야 하며, 그러나 후원자가 이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름 단기 취업 및 여행 프로그램

비자 면제 국가 출신으로 직장을 구하지 않고 미국에 도착한 경우, 후원자는 미국에서 한 주 동안의 구직 후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후원자는 프로그램 중에 직장을 변경하려는 모든 여름 워크 여행 참가자에게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후원자는 참가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여름 워크 여행 프로그램 참가자의 초기 및 추가 직장 배치를 평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인턴 혹은 연수 프로그램

후원자는 훈련/인턴십 배치 계획 (Form DS-7002)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귀하가 받을 수입에 대한 서면 진술과 프로그램의 훈련 목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당 최소 32시간의 근무를 해야 합니다.

후원자는 귀하가 지불해야 할 비용 및 수수료에 대한 서면 진술과 미국에서의 생활비 예상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후원자는 귀하가 의료, 대피, 송환 보험을 갖추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페어(Au Pair):

- 호스트 가족은 귀하가 중등과정 이후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고, 최고 500불까지의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귀하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혹은 일주일에 45시간 이상 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상담사는 귀하와 귀하의 호스트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는 특정한 이유(예: 일, 학업,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 등)로 미국에 오기 위해 필요한 미국 정부 문서입니다. **비자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하며** (참고: 캐나다 시민은 입국 시 J-1 비자 상태로 입국 신청을 합니다). 비자를 받으면 미국으로 여행하여 입국 시 미국 이민 담당관("CBP 담당관")에게 비자를 보여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면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전에 새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 및 미국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visas.state.gov.

CBP 담당관이 미국에 입국을 허용하면, 전자 방식으로 I-94 양식이 생성됩니다 (때때로 종이 문서일 수도 있습니다). I-94 양식에는 입국 날짜, 비자 유형, 그리고 미국을 떠나야 하는 날짜가 기재됩니다. "입국 허용 날짜" 전까지 미국을 떠나야 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만약 체류 연장을 원할 경우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I-94 기록은 <https://i94.cbp.dh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대를 신고하거나 상황을 보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귀하나 귀하의 가족을 다치게 하거나 추방하거나 체포한다고 위협하는 경우;
- 떠나거나 불만을 제기하거나 상황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려는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
- 사람들이 다시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빚을 갚기 위해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경우

어떤 사람도 귀하에게 노동, 서비스 또는 상업적 성행위를 강제로 시키거나 계속해서 제공하게 할 수 없으며, 귀하가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귀하의 빚을 갑자기 바꿔서 갚기 어렵게 만들거나, 빚을 갚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합리적인 시간 내에 갚기 어려운 큰 금액을 빚졌다고 말하는 경우
- 귀하가 동의하지 않은, 또는 이전에 동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더 많은 금액을 빚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이전에 동의하지 않은 교통비, 주거비, 식비 및 기타 비용을 추가하는 경우
- 규칙을 어기거나,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충분한 노동, 서비스 또는 상업적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 벌금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경우

도움말: 고용주가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경우, 그 모든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두세요.

떠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

사람들은 귀하나 다른 사람들이 떠나거나, 목소리를 내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하거나, 근무하지 않을 때 갈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귀하는 항상 자신의 여권, 비자, 출생 증명서 또는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이를 귀하에게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 귀하는 필요할 때 충분한 음식, 휴식, 수면 또는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도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 귀하는 가족, 다른 직원들, 고객, 또는 법적 또는 사회 복지 서비스 담당자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귀하의 의사소통을 막거나 말하는 내용을 감시해서는 안 됩니다.

속임수에 당하는 경우

아무도 귀하에게 일을 하거나 상업적 성행위를 하도록 속이거나 속여서는 안 됩니다. 속임수나 거짓말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의 종류, 근무 시간, 근무 조건, 생활 조건, 또는 급여에 대해 거짓된 약속을 하는 경우;
- 약속된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더 나쁜 조건에서, 또는 더 적은 급여로 일을 하게 만드는 경우;
- 귀하에게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
- 떠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믿지 않거나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
- 고용주나 다른 직원들에 대해 거짓말을 하라고 말하는 경우..
- 거짓 약속의 예로는, 예를 들어 숙련된 간호사로 일할 것이라고 말한 후 간호원을 청소하게 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한 후 이국적인 춤이나 상업적 성행위를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학대를 신고했다고 해서 귀하를 추방할 수 있나요?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신고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고용주를 떠나더라도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민 문제로 걱정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선택지를 이해하려면 국가 인신매매 핫라인(1-888-373-7888)으로 연락하십시오.** 국가 인신매매 핫라인은 정부나 법 집행 기관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도움말: 미국에 도착하면 여권과 기타 여행 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고용주가 귀하의 여권을 빼앗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 비자 신청 절차 및 미국 비자: usvisas.state.gov
- 인신매매: www.state.gov/j/tip
- J-1 비자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j1visa.state.gov
- 평등과 직장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포함), 출신 국가, 나이(40 세 이상), 장애 또는 유전자 정보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차별 신고 방법:
www.eeoc.gov
- 직장 안전 권리 또는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검사 요청 방법:
www.osha.gov
- 고용주가 대신 징수한 미지급 임금 확인 방법: webapps.dol.gov/wow
-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www.dol.gov/WHD/immigration
- 임금 불만 신고 방법: <https://www.dol.gov/agencies/whd/contact/complaints>
- 시민권 상태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차별 신고 방법:
www.justice.gov/crt/filing-charge
- 임금이나 근무 조건 향상을 위해 다른 근로자들과 결합할 권리 및 차별 신고 방법:
www.nlr.gov
- 건강 보험에 대한 권리, 의무 및 면제 사항: localhelp.healthcare.gov (영어), ayudalocal.cuidadodesalud.gov (스페인어)
- 범죄 피해자 권리. 범죄 피해자 권리 법: <https://www.justice.gov/criminal/criminal-vns/victim-rights>- derechos-de-las-v-ctimas
- 1-94: <https://i94.cbp.dhs.gov/i94>
- 잠재적 고용주 청원 상태, USCIS 케이스 상태 온라인: <https://egov.uscis.gov>
- 인신매매에 관한 USCIS 자료:
 - <https://www.dhs.gov/blue-campaign/resources-available-victims>
 - <https://www.uscis.gov/humanitarian/victims-of-human-trafficking-and-other-crimes>
- 근로자를 위한 이민 혜택을 제공하는 USCIS 프로그램, 예: T 및 U 비이민 신분:
<https://www.uscis.gov/humanitarian/victims-of-human-trafficking-and-other-crimes>
- 인신매매 우려가 있는 난민 혜택 및 사례 관리 서비스, 인신매매 관련 도움을 받으려면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사무소(OTIP)를 방문하세요:
 - <https://www.acf.hhs.gov/otip/victim-assistance/child-eligibility-letters>
 - <https://www.acf.hhs.gov/otip/victim-assistance/certification>

일반적인 이주 노동자 질문과 자료를
찾으려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아이티 크리올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등 8개 언어로 제공됨):

***MigrantWorker.gov /
TrabajadorMigrante.gov***



도움말: 모든 근무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노트를 준비하여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적고, 받은 급여, 급여를 받은 날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그 이유를 기록하세요.

SAMPLE WEEKLY WORK LOG

Employee:		Supervisor:	
Date	Activities	Hours	Payment
		In: _____ Out: _____ Total: _____	

Employee:		Supervisor:	
Date	Activities	Hours	Payment
		In: _____ Out: _____ Total: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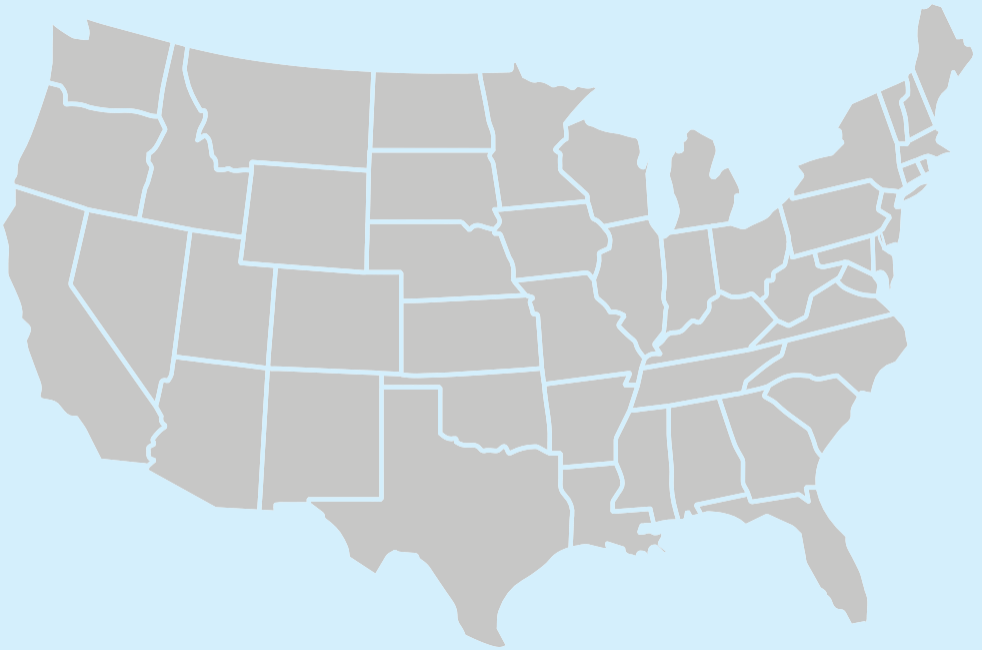
Employee:		Supervisor:	
Date	Activities	Hours	Payment
		In: _____ Out: _____ Total: _____	

Employee:		Supervisor:	
Date	Activities	Hours	Payment
		In: _____ Out: _____ Total: _____	

Employee:		Supervisor:	
Date	Activities	Hours	Payment
		In: _____ Out: _____ Total: _____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소책자와 함께 제공되는 비디오의 온라인 버전을 보려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고 나타나는 링크를 열어보세요.



U.S. DEPARTMENT *of* STATE